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321

발의연월일: 2021. 2. 25.

발 의 자: 장혜영・이은주・강은미

심상정 • 배진교 • 류호정

황운하 · 용혜인 · 권인숙

이수진(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 위 제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스토킹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과 스토킹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 성폭력 및 살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법만으로 스토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이에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스토킹범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다.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 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조).
- 마.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 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

- 사.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 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 아. 검찰총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경찰청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해야 함(안 제18조).
- 자.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 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 차.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22조).
-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23조).
- 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하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임시보호조치 등의 불이행, 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29조까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사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 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 로에 서 있는 행위
 - 다.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라.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 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 태에 두는 행위
 - 마.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

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 바.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 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녹화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유포 등"이라 한다)하는 행위
- 아. 피해자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
- 자.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 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물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 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 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 타.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방 및 그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중 그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신고 및 현장조사) ① 누구든지 스토킹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 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부과와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경고장을 통한 경고 실시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피해자에게 제6조제2항의 임시조치 요청, 제11조제1항의 신변안 전조치 신청, 제14조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등 피해자 보호규정 및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안내
 - 4. 피해자에게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안 내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인도
 - ②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

여야 한다.

- 제5조(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 여 제8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한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제5조제1항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6조에 따른 임시

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5조제 2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 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8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 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또는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100미터 이내 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4. 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 5. 그 밖에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가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해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가해자에게 변호사 등을 선임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임시조치는 2회에 한정하여, 같은 항 제4호의 임시조치는 1회에 한정하여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 게 임시조치의 내용, 제10조에 따른 불복 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임시조치의 취소·변경)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 8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 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직권이나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보 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 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2.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3. 시간대·동선·횟수 등을 대상자의 환경에 맞춘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4. 112시스템에 대상자와 핫라인 구축
 - 5. 대상자의 신원정보 변경 지원
 - 6. 거주지 이전 등 피신 권고 및 관련 절차 안내·보조 실시
 - 7.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②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신고자는 판사, 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있다.
-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불이익처분의 금지)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를 하였거나 피해회복절차 중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4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 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
- 제14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

명령을 할 수 있다.

- 1.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서 접근금지 또는 퇴거명령
-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5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 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 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6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 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4조제 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 령"으로 본다.
-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아니하는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제55조의7부터 제5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본다.
 -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신고자(고소·고발을 포함한다)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및 제15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 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① 법원은 제8조의 임시조치를 받은 스토킹행위자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조사 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0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스토킹범죄의 수 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제22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 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 제23조(스토킹피해자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 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 해상담소 등 유관 기관(이를 "피해자지원기관"이라고 한다)에서 피 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5조(가중처벌) ①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4년 이하 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토 킹범죄를 범하거나 업무, 교제의 상대, 배우자, 동거인, 친족 등 인 적 신뢰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피해자에게 성적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협박 등 위협이 있는 경우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스토킹범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스토킹범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스토킹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 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한다.
- 1. 스토킹 행동의 진단·상담
- 2.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평등과 인권에 관한 교육
- 3.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27조(임시조치 등의 불이행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4조제1항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 니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죄) 제12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비밀 누설 금지 위반죄) 제20조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검사가 제7조제2 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 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따르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
 -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스토킹행위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1조(고소에 관한 특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

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